

(22) 지방세 지출보고서(2017년도 실적기준)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7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31,871,262,290
	비과세	25,329,035,200
	감면	6,542,227,090
지방세 징수액(B)		212,283,297,580
비과세·감면율(A/A+B)		13.1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원, %)

분 야		'17년(결산)	비중
총 계		31,871,262,290	100
1	일반공공행정	14,035,010,180	44.0
2	공공질서 및 안전	155,912,830	0.5
3	교육	2,139,097,930	6.7
4	문화 및 관광	718,335,800	2.3
5	환경보호	24,278,140	0.1
6	사회복지	1,710,572,310	5.4
7	보건	55,570,060	0.2
8	농림해양수산	306,664,640	1.0
9	산업·중소기업	323,395,170	1.0
10	수송 및 교통	38,563,230	0.1
11	국토 및 지역개발	1,949,483,790	6.1
12	과학기술	0	0
13	국가	10,264,551,010	32.2
14	외국	212,320	0
15	기타	149,614,880	0.5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7년(결산)	
			비중
총 계		31,871,262,290	100
	보통세	31,871,262,290	100
	주민세	659,715,430	2.1
	재산세	29,659,985,530	93.0
	자동차세	1,551,561,330	4.9
	지방소득세	0	
	담배소비세	0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6년(결산)	'17년(결산)	증감액
계	30,363,861,120	31,871,262,290	1,507,401,17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2,508,665,340	13,513,984,190	1,005,318,85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6,853,210	10,934,400	-5,918,81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50,988,580	53,410,090	2,421,510
사유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95,325,580	432,608,190	37,282,61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2,517,720	24,073,310	1,555,59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365,190	365,300	11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51,608,580	155,547,530	3,938,95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35,624,410	35,860,570	236,16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499,273,700	521,971,810	22,698,11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80,512,130	82,908,080	2,395,95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151,991,520	1,228,590,460	76,598,94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254,650,980	269,767,010	15,116,03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664,511,870	698,932,360	34,420,490

감면 유형	'16년(결산)	'17년(결산)	증감액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5,113,430	4,810,430	-303,00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532,040	3,552,100	20,06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729,760	707,180	-22,58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9,987,390	10,333,730	346,340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21,444,340	24,278,140	2,833,8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62,120,000	62,010,000	-11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811,995,910	794,115,930	-17,879,98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135,880	1,213,890	78,01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64,704,020	171,714,390	7,010,37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5,282,290	13,069,120	7,786,83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0,859,570	183,244,970	2,385,40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27,131,240	380,880,800	53,749,56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3,184,400	3,954,100	769,70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45,050	558,130	413,08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89,935,590	96,572,580	6,636,990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8,356,330	3,238,400	-5,117,93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024,560	55,570,060	-24,454,50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79,707,040	83,190,040	3,483,00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4,419,960	7,599,850	-6,820,11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3,444,360	17,177,600	3,733,24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5,203,940	17,711,250	2,507,31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1,300	15,470	-5,83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63,920,650	173,712,520	9,791,87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7,832,550	7,257,910	-574,64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9,219,090	3,542,680	-5,676,41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0,927,360	21,818,870	891,510

감 면 유 형	‘16년(결산)	‘17년(결산)	증감액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1,300	15,470	-5,83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63,920,650	173,712,520	9,791,87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7,832,550	7,257,910	-574,64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9,219,090	3,542,680	-5,676,41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0,927,360	21,818,870	891,51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346,860	242,160	-104,70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5,003,390	0	-35,003,39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30,436,880	297,791,460	-32,645,42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7,404,440	34,790,190	-2,614,25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4,911,450	3,773,040	-1,138,41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22,915,150	23,530	-122,891,62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767,894,590	718,318,080	-49,576,5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855,352,450	968,469,940	113,117,4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283,417,980	262,672,240	-20,745,740
국가에 대한 비과세	9,828,102,670	10,263,565,840	435,463,17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022,290	985,170	-1,037,120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229,900	212,320	-17,58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2,876,250	96,366,360	-6,509,89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34,277,820	25,183,580	-9,094,24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3,213,780	3,242,750	28,97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7,064,650	18,049,120	984,47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481,980	488,910	6,93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4,641,730	6,284,160	1,642,430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4,035,010,18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13,513,984,1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64,346,500
		재 산 세	13,443,218,980
		자 동 차 세	6,418,710
		지 방 소 득 세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0,934,400
		재 산 세	10,934,400
		지역자원시설세	
		-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53,410,0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90,000
		재 산 세	53,320,09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432,608,19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432,608,190
		지역자원시설세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소 계	24,073,3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4,073,31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55,912,830
6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365,300
		취 득 세	
		재 산 세	365,300
		-	
7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 계	155,547,5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155,547,530
지방소득세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교 육		합 계	2,139,097,930
8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521,971,8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25,309,750
		재 산 세	396,662,060
		지역자원시설세	
9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82,908,080
		재 산 세	82,908,080
		지역자원시설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1①, § 41②, § 41③, § 41⑤)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2①, § 42②, § 42⑤)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 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1⑦)	소 계	1,228,590,4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73,184,000
		재 산 세	1,155,406,460
		지역자원시설세	
11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43①, § 43②, § 43③, § 44)	소 계	35,860,5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35,860,570
1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 45②)	소 계	269,767,010
		취 득 세	
		재 산 세	269,767,010
		지역자원시설세	
		-	
1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0①, § 50②, § 50③, § 50⑤, §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④)	소 계	698,932,3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59,592,250
		재 산 세	639,340,110
		지역자원시설세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718,335,800
1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698,932,3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59,592,250
		재 산 세	639,340,110
		지역자원시설세	
14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4,810,430
		주 민 세	4,810,430
		-	
15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 계	3,552,1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3,552,100
		지역자원시설세	
16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 계	707,180
		취 득 세	
		재 산 세	707,180
		레 저 세	
17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소 계	10,333,730
		취 득 세	
		재 산 세	10,333,730
		지역자원시설세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24,278,140
18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재산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3①)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24,278,140
		취 득 세	
		재 산 세	24,278,140
		-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1,710,572,310
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 계	62,010,000
		주 민 세	62,010,000
		-	
20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794,115,930
		취 득 세	
		자동차세	794,115,930
		-	
21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 계	1,213,890
		취 득 세	
		재 산 세	1,213,890
		지역자원시설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2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①, § 22②, § 22③, §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⑥)	소 계	96,572,5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2,754,000
		재 산 세	83,818,580
	-		
23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2①, § 22의2②)	소 계	171,714,390
		취 득 세	
		재 산 세	171,714,390
		-	
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①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0①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① 2호)	소 계	13,069,120
		취 득 세	
		재 산 세	13,069,120
		지역자원시설세	
		-	
25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3 1.3호)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3 2호)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3)	소 계	3,238,4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3,238,4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2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183,244,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②, §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7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54① 8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227,540
		자 동 차 세	182,017,430
		지역자원시설세	
-			
2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소 계	380,88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②)(삭제)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③)(삭제)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④)(삭제)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4⑦) 	취 득 세	
		재 산 세	380,880,800
		지역자원시설세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60/100*1/10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소 계	3,954,100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등록면허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재산세	3,954,100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29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소 계	558,130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취 득 세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36의2①)(삭제)	재 산 세	558,130
		지역자원시설세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보건		합 계	55,570,060
3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②)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③)	소 계	55,570,0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55,570,060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06,664,640
31	농업인에 대한 감면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소 계	83,190,0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70,702,000
		재 산 세	12,488,040
		자동차세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32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용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7,599,85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599,850
		-	
3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소 계	17,177,6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7,177,600
3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7,711,250
		재 산 세	17,711,25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35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 12②)	소 계	15,4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5,470
3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 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 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③·④) -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14의2)	소 계	173,712,52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73,712,520
		-	
3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6)	소 계	7,257,910
		취 득 세	
		재 산 세	7,257,910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23,395,17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3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 119②, § 120③, § 121)(삭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58의3 ①·③)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60③ 1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58의3②)	소 계	3,542,6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3,542,680
		지방소득세	
		-	
39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신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2③·④)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5①)	소 계	21,818,87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21,818,870
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6①)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54① 6·7호)	소 계	242,160
		취 득 세	
		재 산 세	242,160
		담배소비세	
41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8②)	소 계	297,791,460
		취 득 세	
		자동차세	297,791,460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38,563,230
42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소 계	34,790,1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34,790,190
		-	
43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차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3,773,040
		자동차세	3,773,040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949,483,790
4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 계	23,530
		취 득 세	
		재 산 세	23,53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949,483,790
4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718,318,080
		취 득 세	
		재 산 세	718,318,080
		-	
		-	
4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968,469,9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968,469,940
		-	
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262,672,240
		재 산 세	262,672,240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0
48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과학관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 특례제한법 § 44)	소 계	0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국 가		합 계	10,264,551,010
49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 9①, § 26①, § 77① 1호, § 90, § 109①, §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 126)	소 계	10,263,565,8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85,545,500
		재 산 세	10,064,313,390
		자동차세	13,706,95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 109① 2호, § 109②, § 145②)	소 계	985,170
		재 산 세	985,170
		지역자원시설세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외 국		합 계	212,320
51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 77① 2호, § 88 2호, § 126 3호)	소 계	212,320
		주 민 세	
		자동차세	212,320
		지방소득세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기 타		합 계	149,614,880
52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25,183,580
		취 득 세	
		재 산 세	25,183,580
		지역·자원·시설세	
		-	
53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96,366,3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96,366,36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기 타		합 계	149,614,880
54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 계	3,242,75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3,242,750
		지역자원시설세	
	-		
55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탁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8,049,120
		취 득 세	
		재 산 세	18,049,120
		-	
56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 계	488,91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488,910
		-	
57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6,284,160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371,000
		재 산 세	3,301,560
		자동차세	1,611,600
		지역자원시설세	